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5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검사 기피·방해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02150호)

2024. 11.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동 찬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출 자 : 정 부
2. 제 출 일 : 2024. 7. 23.
3. 회 부 일 : 2024. 7.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전자어음관리 업무에 관한 시설·장비·서류, 그 밖의 물건에 대한 검사를 기피하거나 방해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법무부장관의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대한 검사를 기피하거나 방해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현행 제22조제3항 삭제 및 안 제23조).

현행	개정안
제22조(벌칙) ①·② (생략) ③ 제20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기피하거나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생략) 제23조(과태료) <신설>	제22조(벌칙) ①·② (현행과 같음) <삭제>
①·② (생략)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법무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23조(과태료) ① 제20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기피하거나 방해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③ (현행 제1항 및 제2항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 -----.

- 2023년 3월 정부는 기업과 민생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기업인과 자영업자들의 개선 수요가 큰 규정을 대상

으로 경제 형벌규정 2차 개선과제를 마련하였음.¹⁾²⁾

○ 2차 개선과제로는 국민·기업들의 자유·창의를 저해하는 주요 경제 형벌 규정 62개, 생활밀착형 규정 23개, 사문화된 규정 23개가 선정됨.

- 주요 경제형벌 규정은 기업의 자유·창의를 위축시키는 규정, 경미한 의무이행까지 형벌로 통제하는 규정, 유사입법례 대비 형벌·형량이 과도한 규정 등이 집중적으로 선정됨.

- 생활밀착형 규정은 5년간 입건수 1천 건 이상인 규정 중 저소득층·자영업자 등에게 영향이 크고 범죄 중대성이 낮은 규정(5백만원 이하 소액벌금형 규정으로 낙인효과, 전과자 양산 등 부작용 고려)이 선정됨.

- 사문화된 규정은 대검찰청 DB 분석을 통하여 최근 5년간 입건 사례가 없는 규정 중에서 국민의 재산·안전 등에 끼치는 피해를 고려하여 선정됨.

□ 개정안은 이러한 경제 형벌규정 2차 개선과제 중 하나로, 법무부장관의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대한 검사를 기피하거나 방해한 자에 대한 형벌규정을 과태료규정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1) 2023. 3. 2.자 법무부 보도자료 “첨단전략산업 규제 풀어 2.8조원 투자 창출, 기업 옥죄는 과도한 형벌규정 108개 완화 - 기업투자·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발표 -” 참조

2) 정부는 2022. 6. 16. 경제법령상 형벌이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도록 행정제재 전환, 형량 합리화 등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고, 개선이 필요한 형벌조항을 검토하여 같은 해 8. 26. 경제 형벌 규정 1차 개선 과제를 발표한 바 있음(2022. 8. 26.자 기획재정부·법무부 보도자료 “민간중심 역동 경제 실현을 위한 경제형벌 합리화 - 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계획 및 1차 개선 과제 발표 -” 참조).

- 현행법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전자어음관리기관³⁾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전자어음관리 업무에 관한 시설·장비·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의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대한 검사를 기피하거나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제20조제2항 및 제22조제3항⁴⁾).

□ 개정안에서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전환하려는 행위는 실제 입건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행정상 의무위반행위⁵⁾로서 직접적으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 법익을 침해할 개연성이 높은 행위로 보기 어렵고⁶⁾,

- 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전자어음”이란 전자문서로 작성되고 제5조제1항에 따라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된 약속어음을 말한다.
 4. “전자어음관리기관”이란 제3조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전자어음관리기관) ① 전자어음관리기관은 법무부장관이 지정한다.
 ② 전자어음관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일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재정능력·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는 것
 ③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제20조(전자어음관리기관의 감독 및 검사) ① 법무부장관은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준수하는지를 감독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전자어음관리 업무에 관한 시설·장비·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제22조(벌칙) ③ 제20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기피하거나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전자어음관리기관의 검사 기피·방해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은 최근 10년간 활용된 사례가 없어 활용이 저조한 상황임(법무부).
 6) 어떤 형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를 단지 간접적으로 행정상의 질서에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음에 불과한 경우(단순한 의무태만 내지 의무위반)로 보아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과할 것인가, 아니면 직접적으로 행정목적과 공익을 침해한 행위로 보아 행정형벌을 과할 것인가, 그리고 행정형벌을 과할 경우 그 법정형의 형종과 형량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당해 위반행위가 위의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법적 판단을 그르친 것이 아닌 한 그 처벌내용은 기본적으로 입법권자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그 입법재량에 속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집시법 제19조 제2항에서 금지통고된 옥외집회·시위 등을 주최한 경우는 단순히 행정질서에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는 정도의 의무태만 내지 의무위반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행정 목적을 침해하고 나아가 공익을 침해할 고도의 개연성을 띤 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행정형벌을 과하도록 한 집시법 제19조 제2항이 위의 법리를 어긴 것이어서 헌법 제21조 제1항, 제2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또 그 행정형벌의 내용으로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것이 위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과중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불균형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⁷⁾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입법방향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융위원회의 전자등록기관에 대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제75조제1항제11호⁸⁾) 개정안의 과태료 금액에도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임.

문 의 처

02)6788-5055

한 처벌이라고도 볼 수 없다(헌재 1994. 4. 28. 91헌바14).

- 7) 국회 법제실의 입안기준에서는 검사·조사 또는 출입검사 등의 거부·방해 또는 기피에 해당하는 유형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기술하고 있고(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 2024 개정증보판, p.809~810), 정부의 입안기준에서도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정기관의 직원이 그 감독을 받는 사업장, 공장, 창고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를 조사하는 등을 기피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과태료 처분 대상 위반행위의 일반유형 중 하나로 예시하면서 가능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고 기술하고 있음(법제처, 법령 입안 심사 기준, 2022년, p.598~599).
- 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2. “전자등록”이란 주식등의 종류, 종목, 금액, 권리자 및 권리 내용 등 주식등에 관한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정보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적 방식으로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 6. “전자등록기관”이란 주식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 제51조(보고 및 검사) ① 금융위원회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등록 기관에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전자등록기관의 업무 상황이나 장부·서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7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1. 제51조제1항 또는 제58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